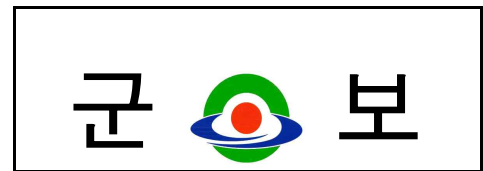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72호 2022. 6. 20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규 칙

○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(예천군 규칙 제1307호)

공 고

○ 공인 폐기 및 신조(개각) 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2-90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2년 6월 20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규칙 제1307호

**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
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**

제1조(「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제8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」의 개정) 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”를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」의 개정)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

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3조”를 “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예천군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의 개정) 예천군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·규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조례·규칙심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 조례·규칙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“조례공포안”을 “조례 공포안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단서 중 “조례공포안을”을 “조례 공포안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예산안·결산안, 그 밖에”를 “예산안·결산안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실·과·소장(이하 “부서의 장”이라 한다)이 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목요일”을 “수요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실·과·소장(이하 “부서의 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실·과·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(별지 제1호 서식)”을 “(별지 제1호서식)”으로, “(별지 제2호 서식)”을 “(별지 제2호서식)”으로 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2이상”을 “2개 이상”으로, “실·과·단·소간”을 “실·과·소 간”으로, “작성”을 “작성하여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별지 제3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3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법무감사업무 담당주사가”를 “법무업무 담당 팀장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별지 제4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4호서식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”를 각각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이 포함된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5개의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「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⇨ 지방자치법 제159조(제1조의2제8호)

나. 「예천군 사무인계인수 규칙」의 개정

-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⇨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(제1조)

다. 「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」의 개정

- 지방자치법 제23조 ⇨ 지방자치법 제29조(제1조)

라. 「예천군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의 개정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(제2조)

마. 「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

- 지방자치법 제117조 ⇨ 지방자치법 제131조(제29조)

공인 폐기 및 신조(개각) 공고

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(개각) 공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폐기 및 신조 사유 : 공인 마멸 및 분실에 따른 개각
2. 폐기 및 신조 개시일 : 2022 년 6 월 20 일
3. 폐기 및 신조 공인내역 : 붙임과 같음

2022년 6월 20일

예 천 군 수

폐기 공인 내역

구 분	공 인 명	서체 및 규격	인 영	비 고
폐기	민원실유천면장 의인전용 (인증기)	전서체 2.1cm×2.1cm		

신조 공인 내역

구 분	공 인 명	서체 및 규격	인 영	비 고
신조	민원실유천면장 의인전용	훈민정음체 2.1cm×2.1cm		
신조	민원실유천면장 의인전용 (인증기)	훈민정음체 2.1cm×2.1cm		